##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0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· 이학영 ·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에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,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(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17 조제1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	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
제8조(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)	제8조(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	③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	
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	
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	3
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	
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	
다) 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 이 지	<u>3년</u>
나지 아니한 사람	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시정명령) 과학기술정보통	제17조(시정명령)
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	
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	
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	
있다.	<b>.</b>
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
	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게 된 경우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